

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765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11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정이유

- 코로나-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,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돌봄 기능 약화, 개인주의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 고립·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고독사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계획수립,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 정의 규정(안 제3조 ~ 제7조)
- 다. 협력체계, 사무의 위탁, 권리보호(안 제8조 ~ 제10조)

3. 제정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6. 예산수반 사항 : 덧붙임(비용추계서-미첨부 사유서)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3. 8. 7. ~ 2023. 8. 28.(21일간)

나. 의견내용 : 해당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

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
2. “고독사 위험자”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)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
3. 고독사 관련 현황
4.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
6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
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
3. 행정복지센터, 사회복지기관,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
2.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
3.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
4. 긴급의료, 응급안전 알림서비스,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
5.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, 교육, 홍보사업
6.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·운영 지원
7. 민간복지 자원 발굴·연계 서비스
8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)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,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·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

한다.

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복지정책과장 강 성 욱
	팀장 직위 · 성명	희망복지팀장 안 선 경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최 동 찬 (790-5532)

비용추계서(미첨부 사유서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제2호

제9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 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을 발의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,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 : 현재로서는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 :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장 강성욱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 : 고독사예방법)
[시행 2023. 6. 13.] [법률 제19443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위험자”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9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